

국토교통부공고 제2023-644호

「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요건 등 관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고시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5월 25일

국토교통부장관

「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요건 등 관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고시」 일부개정안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개인택시면허 양수교육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된 가운데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의 교육정원이 한정되어 양수교육의 수요를 반영하기 어려운바, 실수요자 중심 교육 운영 및 일반택시면허의 경력 인정범위를 확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택시 운전자격 증명서류를 교육 신청시 제출(안 제5조제2항)
- 나. 일반택시면허 경력 인정기간을 3년으로 확대(안 제5조제3항, 제6조 제2항)

3. 의견 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(참조 : 교통서비스정책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molit.go.kr> > 정책자료 > 법령정보 > 입법예고·행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서 제출

- 의견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개 정 안	수 정 안	사 유(검토의견)

나. 보내실 곳

- 주소 : (우)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(정부세종청사 6동)
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교통서비스정책과
- 전화 : 044-201-3816 / 팩스 : 044-201-5581
- 이메일 : deoks77@korea.kr